



의안번호	제162호
------	-------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10. 14.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2호
----------	-------

제출연월일 : 2021. 10. 14.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 ~ 2021. 9.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공동체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00%면제
3. 논산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20%감면
4.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30%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 ②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

③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④ 논산시 양촌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7호의2 및 제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의2.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은 정
	복지자원관리팀장	김 명 중
	담 당 자	박 서 진 (041-746-527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논산시에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u></p>	<p><u>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u> <u>2.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00% 면제</u> <u>3. 논산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20%감면</u> <u>4.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시설 사용료 30%감면</u>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안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2. 미첨부 근거 규정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자원봉사자들의 공공시설 이용률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개정안 제19조 에 따르면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향후 개별 공공시설 조례 개정 시 감면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입 감소를 예측 할 수 없음.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은 정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